

제2022-28호

2025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I. 총 칙	1
1.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수립 근거 및 준수	1
가. 기본사항 수립 근거	1
나. 기본사항의 공표	3
다. 기본사항의 준수	2
라. 기본사항 미준수에 따른 제재	3
2. 전문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4
가.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	4
나. 시행계획의 변경	5
3. 입학전형 기본방향	6
가.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6
나. 입학전형 간소화 및 전형명칭 표준화	6
다. 평생직업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입학전형 확대 및 활성화	7
라. 모집시기별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 운영	7
4.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10
5. 대학입학 표준공통원서 사용 및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	12
II. 입학전형별 기본사항	13
1. 일반전형의 기본사항	13
2. 특별전형의 기본사항	14
3. 특별전형 세부사항	16
가. 정원 내 특별전형	16
나. 정원 외 특별전형	21
III. 전형요소	33
1. 학교생활기록부	34
2. 대학수학능력시험	35
3. 기타 비교과 요소 등	37



IV. 입학전형 및 일정 ----- **38**

- 1. 입학전형 공통사항 ----- 38
- 2. 수시모집 ----- 40
- 3. 정시모집 ----- 42
- 4. 자율모집 ----- 43
- 5. 입학전형 세부사항 ----- 44
 - 가. 합격자 발표 ----- 44
 - 나. 신입생 등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 44
 - 다. 미등록 충원 ----- 46

V. 입학전형 행정사항 ----- **47**

- 1.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및 발표 ----- 47
- 2. 지원·등록 현황 제출 ----- 48
- 3. 지원방법 위반자 관련사항 ----- 48
- 4. 등록금 환불 관련사항 ----- 50
- 5. 입학전형료 ----- 50
- 6. 선행학습 영향평가 ----- 51
- 7. 기타사항 ----- 52

- [붙임 1] 전국 전문대학 현황(2022년 8월 기준) ----- 3- 5
- [붙임 2] 모집요강 표준(안) 마련 ----- 9 5
- [붙임 3]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 0 6
- [붙임 4]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서(양식) ----- 1- 6
- [붙임 5]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전형 일정 비교 ----- 2- 6



I

총 칙

1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수립 근거 및 준수

가. 기본사항 수립 근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고, 전문대교협 정관 제23조의2 근거에 따라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통해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함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표)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②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1.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 2.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④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나. 기본사항의 공표

- 전문대교협은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기본사항을 공표하여야 함(「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기본사항의 공표 시기는 당해 연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8월말 전(입학연도의 30개월 전)으로 함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사항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5항)

여기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1.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기본사항의 준수

-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하 기본사항)의 준수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 한하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입학전형은 이 기본사항을 준수해야 함

※ 단, 계약학과(정원 외), 산업체위탁과정은 기본사항 적용 제외

- 전문대교협은 기본사항의 수립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전문대학(이하 대학, 【붙임1】 참고)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 수립 시 기본사항을 준수해야 함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전문대학 입학전형에 대해 자율성과 통일성을 기반으로 각 대학 간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하여 전문대교협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장, 학부모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심의기구임

※ 근거 : 전문대교협 규정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제2조(구성), 제4조(기능)

라. 기본사항 미준수에 따른 제재

- 대학이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2관련)’에 따라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대교협의 “전문대학 윤리위원회”에서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전문대교협 정관 제23조의3), 조사 결과 위법 사실과 윤리적으로 부적합한 경우가 발견 될 경우 대학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전문대교협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음(전문대학윤리위원회 규정 제8조)



2 전문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가.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 ① 법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1.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있는 경우
 - 2.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 3.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4. 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5.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6.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대학의 장은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수립된 시행계획은 전문대교협에 제출해야 함

※ 시행계획의 공표 시기는 당해 연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4월말 전(입학연도의 22개월 전)으로 함

- 대학이 시행계획을 제출할 때, 정원 내 전형의 모집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모집인원 ‘미지정’은 불가함. 단, 정원 외 전형의 경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미지정’은 허용함
 - ※ 단, 정원 외 전형 모집인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별표1]의 산정기준 및 범위로 하며, 특히, 제14호 기화균형선발 전형은 지원자격별 모집인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고 시행해야 함

- 대학은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라 교육부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모집유보 인원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
 - ※ 단, 유아교육과 등 교원 양성 관련 학과 및 보건의료계열은 제외(「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제2조제1항)

-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성인 학습자 및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의 전담학과를 설치할 경우 학칙에 근거를 마련해야 함
 -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제6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등(제7호),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제12호), 특성화고 등을 졸업하고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제14호 다목)만을 대상으로 전담학과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 시행령 [별표1]의 산정기준 및 범위를 준수해야 함
 - ※ 유학생 선발시 외국인 기준, 범위 등 세부사항은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준수 (유학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담학과 운영불가)

나. 시행계획의 변경

- 대학의 장은 이미 공표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1.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3.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대학의 장이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전문대학교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함

※ 승인절차 및 구체적인 처리기준 등은 전문대교협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안내

- 대학이 정부의 처분 또는 전문대교협의 조치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공표한 이후의 시점부터 해당 학년도 입학전형(학생모집) 시작 일 이전까지 변경 가능함
- 다만, 대학의 자체적인 결정(학과 개편 및 구조조정 등)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변경 완료해야 하는 기한은 입학연도의 학기 개시일(3월1일 기준) 8개월 전까지 완료함
※ 모집요강도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입학연도의 학기 개시일(3월1일 기준) 8개월 전까지 완료 및 공개
- 대학의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해 전문대교협의 수정 및 조정 등 통보가 있을 시 대학은 이를 반영해야 함

3 입학전형 기본방향

가.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 대학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모함
- 대학입학 전형요소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와 사교육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며, 교과 외 활동은 고교 교육과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참가한 활동을 중심으로 반영할 것을 권장함
-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별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합리적인 입학전형 운영으로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와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나. 입학전형 간소화 및 전형명칭 표준화

- 교육수요자들(학생·학부모·진학교사 등)이 대학의 전형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입시를 준비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전형요소 위주로 입학 전형방법 간소화 지속 추진
 - 핵심 전형요소란 대학에서 실제 반영하는 평가항목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면접, 실기, 서류 등의 5개 요소를 말함
 - 대학이 합리적으로 모집시기 및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전형유형을 선택하고 전형요소 간 반영 비율을 결합하여 수시 4개, 정시 4개 이내로 전형방법 수 제한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전형방법으로 산정함
 - 전형요소의 반영비율 등은 평가에서 실제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하여야 함
 - 실기위주의 경우 최대 전형방법 수 기준(수시4개, 정시4개) 산정에서 제외



- 교육수요자들이 대학의 전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별 대학의 모집요강 표준안(案)을 도입·확대하고,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전형명칭 표준화」를 추진함 (【붙임2】 참고)
- 위주 구분 및 대학의 전형에서 요구하는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 요건 등을 충분히 대표하는 용어로 대학 간에 전형명을 통일화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전형명칭의 범주를 명확히 함

다. 평생직업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입학전형 확대 및 활성화

- 직업교육의 특성과 학생의 재능과 열정을 살릴 수 있도록 학업 성적 이외에 취업역량에 필요한 소질과 적성, 인성을 높게 평가하는 전형방법을 적극 활용
 - 학생부, 면접, 서류, 실기위주의 전형을 확대하여 수능 성적위주의 획일적 선발보다는 소질과 적성, 인성을 중시하는 전문대학 특성에 맞는 학생선발 기회 확대
- 평생직업교육의 다양한 수요 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해 만학도 및 성인 재직자,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대상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사회·지역 배려자, 전직자, 경력단절자 등의 입학전형 확대 및 활성화
 - 제2의 경력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만학도 및 성인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 확대 운영
 - 협약을 통한 고교-대학 간 연계교육을 우선으로 한 입학전형 확대·운영
 - 사회·지역 배려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특별전형」 확대·운영
 - 성인학습자(40세이상 전직자, 경력단절자 등), 고교 조기졸업자, 고졸 검정고시(학교밖 청소년 포함)등 평생직업교육 및 계속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다양한 수요계층을 위해 별도 전형 확대·운영

라. 모집시기별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 운영

- 모집시기별 취지에 맞게 전형을 운영하도록 수시모집은 학생부위주, 정시모집은 수능위주 전형유형 운영을 권장하며, 모집시기별 선발 비중은 대학이 자율로 정함
 - (수시모집) 학생부, 면접, 실기, 서류 등을 활용하여 수험생의 소질과 적성·학업의지·인성 등을 평가하여 선발

- (정시모집) 수능, 학생부, 면접, 실기, 서류 등을 활용하여 수험생의 학업성취수준을 평가하여 선발
 - (자율모집) 수능, 학생부, 면접, 실기, 서류 등을 활용하여 수험생의 학업성취수준을 평가하여 선발
- 수시모집 시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를 최저학력기준으로 설정·반영하는 방법을 최대한 지양
- 전공 특성에 따라 학업성취수준 등 최저학력기준이 필요한 경우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 성적을 활용하되, 부득이 수능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최저학력 기준은 등급으로만 설정하여 전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함
- 정시모집 시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하거나 전형요소로 활용할 경우,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 및 지원 가능성 확대를 위해 수능 응시영역 또는 반영영역(영역 내 선택과목 포함)과 반영비율, 수능 가(감)산점 등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권고함



※ 참고 : 전문대학의 전형체제 표

단계	A	B	C	D	E
↓					
항목	모집시기	전형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전형방법
↓					
내용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일반전형 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학생부 위주 수능 위주 면접 위주	일반고 특별전형 특성화고 특별전형 고른기회 특별전형	학생부(교과)60%+면접40% 면접80%+학생부20% 실기60%+서류40%

항목	내용	의미
모집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시모집 정시모집 자율모집 (결원 발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입학지원방법 등)에 따른 모집 의미
전형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 내 일반전형 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에 따른 전형 의미
전형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위주 전형(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수능위주 전형 면접위주 전형 서류위주 전형 실기위주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주 전형은 주된 전형요소(반영 비율 50%초과)를 중심으로 한 전형을 의미 ※ 전형요소 : 학생부(교과/비교과), 수능, 면접, 서류, 실기 등 5개 요소
전형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 내 일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자격에 제한 없는 전형 정원 내 특별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특기자, 추천자, 고른기회, 대학자체 정원 외 특별전형(관련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기회균형 선발(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서해5도,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가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형명은 각 전형에서 요구하는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요건 등을 명칭화한 것을 의미
전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선발 시 단일전형요소 또는 전형요소 간 결합을 통한 실제 선발평가방법 예시) 학생부(교과) 60% + 면접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요소 실제 반영비율, 적용 방법을 의미

4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강구함
 - ※ 대학은 부정방지 대책 및 입시 윤리규정 등을 포함한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운영
- 대학은 전문대교협의 「전문대학 회피·배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고, 대학은 입학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회피·배제를 실시함
- 대학은 입학사정관을 운영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를 준수 하여야 함

-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란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4. 그 밖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 대학은 모집단위별로 전공특성에 대한 명확한 요구수준 설정과 사전에 합리적인 선발절차, 전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시행계획에 명확히 하도록 함

-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해당 전형의 취지와 운영목적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



□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동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입학취소를 하여야 한다.

- 대학은 학칙으로 법령에 따른 입학취소의 사유 및 이에 해당할 경우 입학취소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여야 함
- 전형과정 및 입학 후에도 전형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입학전형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 내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함

-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다수의 평가위원(입학사정관 등)이 평가하여야 함

□ 대학 입학전형과 관계된 기록물은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국가기록원)에 의거 대학별로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을 설정하고 대학 입학전형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함(【붙임3】 참고)

□ 예체능 실기고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예체능 실기고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학별 평가방법 및 방안 수립을 권장함

- 세부 모집단위(세부전공, 악기, 종목, 포지션 등) 별로 선발할 경우 모집요강에 세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명시 의무화
- 실기평가 시 3인 이상 참여, 1/3 이상 또는 1인 이상 외부위원(타 대학 교수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 권고

5 대학입학 표준공통원서 사용 및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전문대교협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공통원서를 마련하고, 대학은 전문대교협에서 제공하는 표준공통원서를 사용하여 원서를 접수하는 것을 권장함
- 대학은 원서접수 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리사항 점검을 위해 DB 작동기록, 보안장비 운영기록, 웹서버 운영기록 등 주요 로그를 일정기간 보관 협조함
 - ※ 원서접수를 외부기관에서 대행 처리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대학자체점검 및 외부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대학은 원서접수 처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정보 보호 관리 체계(ISMS) 인증’, 또는 ‘개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을 획득한 기관에서 원서접수가 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대학은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유출 및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함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 대입전형 학생의 개인정보가 보유기간 만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 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파기 절차 등은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규정을 참고
 -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령을 준용함
 -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12조 및 제60조 등



II

입학전형별 기본사항

1 일반전형의 기본사항

-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 대상·지원 자격 기준·평가 기준 등의 전형방법을 결정함
 -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종교, 성별, 재산, 장애, 연령 등)에 의해 자격기준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은 학칙과 동일해야 함
 - 주간 모집단위와 야간 모집단위는 각각 분리하여 모집해야 함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신입생 모집요강 및 대학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후 모집함

2 특별전형의 기본사항

「특별전형의 종류」

- 정원 내 특별전형(대학의 자체 특별전형) : 입학정원 내에서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독자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특별전형
- 정원 외 특별전형(법령으로 정한 특별전형)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만학도 및 성인 재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개별 특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발하는 특별전형

□ 전형원칙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제40조)

- 대학 설립 목적과 직업교육 특성에 따라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대학별 전형기준으로 설정
- 대학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선발에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 적용
-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
- 대학이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직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함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정원 내 특별전형 :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
- 정원 외 특별전형 : 모집인원 산정기준 및 범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개별 특별법에 따름
 - ※ 정원 외 특별전형의 모집인원 산정기준 및 범위 참고
 - ※ 단, 유아교육과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편입·재입학과 정원 외 입학 및 전과 등을 합한 수는 학과별 승인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원양성기관 정원 외 운영 규정을 따름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 산정기준 및 범위】

조항	전형명	대상자	총입학정원 대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보건계열*	간호	그외학과
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6·7호 대상자 제외)	2%이내	10%이내		
6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모집인원 제한 없음	모집인원 제한 없음		
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결혼이주민	모집인원 제한 없음	모집인원 제한 없음		
4호	장애인 등 대상자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	모집인원 제한 없음	모집인원 제한 없음		
8호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모집인원 제한 없음	10%이내	30%이내	모집인원 제한 없음
12호	만학도 및 성인 재직자	전문대학(「수도권장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 제외)에 입학하는 만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5%이내	5%이내		모집인원 제한 없음
14호	가 라 다 기회균형선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4% 이내	10%이내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5.5%이내 (농어촌을 포함하여 최대 5.5%이내)	20%이내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자 중 3년 이상 재직자	11%이내 (농어촌, 기초생활 등을 포함 하여 최대 11%이내)	간호보건계열 모집금지 (유아교육과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1호	위탁교육	산업체 위탁학생, 기타위탁학생	교육부장관이 정함			
서해 5도법	서해5도	서해5도교육과정이수자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1%이내	5%이내		
제주 특별법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이내	10%이내		
산학 협력법	계약에 의한 교육	계약학과 입학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20% 이내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 이내)			

※ 보건계열 : 전문대학 9대 간호보건계열 중 간호학과를 제외한 학과 (물리치료, 방사선, 안경광학, 응급구조, 임상병리, 작업치료, 치기공, 치위생)

3 특별전형 세부사항

특별전형 분류

구분	전형명	
정원 내 특별전형	▸ 일반고	
	▸ 특성화고	
	▸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 고른기회	
	▸ 특기자	
	▸ 추천자	
	▸ 대학자체	
정원 외 특별전형	▸ 위탁교육(1호)	
	▸ 재외국민 및 외국인(2호, 6호, 7호)	
	▸ 장애인 등 대상자(4호)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8호)	
	▸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12호)	
	▸ 기회균형 선발(14호)	▸ 농어촌학생(가목)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다목)
		▸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라목)
	▸ 서해5도	
	▸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가족	
▸ 계약에 의한 교육		

※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 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각 호(목)에 해당함

가. 정원 내 특별전형

「운영 원칙」

-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해 선발
- 기본사항에 의한 자격 기준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원 자격 및 대상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직업교육의 진흥과 전문대학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1 일반고 특별전형

자격 기준 : 다음의 지원 자격을 「일반고 특별전형」 으로 설정할 수 있음

- 고등학교 구분 상, “일반고등학교”는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해당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
- 다만, 지원 자격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인정 과정 졸업(예정)자를 포함할 수 있음

대학이 제시한 전형방법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으로 선발

보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대학이 전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으로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함

2 특성화고 특별전형

자격 기준 : 다음의 지원 자격을 「특성화고 특별전형」 으로 설정할 수 있음

- 고등학교 구분 상,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해당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3호, 제91조)
- 다만, 지원 자격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직업교육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졸업(예정)자를 포함할 수 있음

대학이 제시한 전형방법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으로 선발함

보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대학이 전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으로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함

3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특별전형

정부사업에 따른 연계교육 대상자, 고교-전문대학 간 연계교육 대상자 등 관련 협약에 따라 우선 선발 가능하며,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특별전형」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함

4 고른기회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다음의 지원 자격을 「고른기회 특별전형」으로 설정할 수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 등 대상자
- 농어촌학생	- 서해 5도 학생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만학도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 지역인재
-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자립지원 대상자

□ 운영 기준 :

- 「고른기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설정할 때에는 해당 법령상 제시된 지원 자격 인정 범위 및 기본사항에 기술된 정원 내·외 지원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해야 함(수도권 대학 정원 내 만학도 선발 가능)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로 자격여부를 확인함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과정 중에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로 국내 출생 자녀 또는 국내 입국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제3국 출생여부 포함)' 제출 등으로 확인
- 자립지원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2항에 따름
※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보호조치 종료 및 시설을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한 전형 운영은 다음과 같은 자격 기준 및 심사사항을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함

「지역인재 전형」

- 지역범위는 아래 [표]와 같이 해당 대학 소재 권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선발방법 등은 대학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정
-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 전문대학에서 활성화
- 지원 자격 설정 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 해당 지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설정하거나 특정지역의 고교, 협정 체결 및 자매결연 고교 만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음



- 고교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 졸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지원 자격을 설정할 수 없음
 - 재학기준은 고교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외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음
- ※ 지원자격(2028학년도부터 적용)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2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1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

- 간호학과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학비율을 준수하여 선발하여야 함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에 따름
 - ※ 학생입학비율 : (모집단위별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원)/(모집단위별 전체 입학인원)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최소 입학 비율】

권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가.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30
나.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30
다.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30
라. 부산·울산·경남권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30
마. 강원권	강원도	15
바.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15

【지역 기초생활 수급자 등 학생 최소 선발 인원】

모집단위별 전체 입학인원	최소 선발인원
50명 이하	1명
50명 초과 100명 이하	2명
100명 초과 150명 이하	3명
150명 초과 200명 이하	4명
200명 초과	5명

5 특기자 특별전형

- 특별한 기술과 기능, 각종 실적, 어학·문학·수학·과학 능력 및 예·체능 특기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특기자 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방법으로 운영
- 다만, 체육특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은 다음과 같은 자격 기준 및 심사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하여야함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의미: 지원 자격 또는 전형요소에 체육 관련 경기/대회 참여 경력이나 자격·성적·입(수)상실적을 요구/활용하는 전형을 의미함
-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해야 함.
- 체육특기자 전형요소에 학생부 교과성적 및 출석, 학생선수 폭력 가해조치 이력 반영 의무화(반영비율은 대학 자율 결정)
- 모집요강에 단체종목 포지션별 모집인원 및 개인종목 종목별 모집인원 명시 의무화
- 실적평가 시 정량적 평가기준 사전 마련 및 모집요강에 상세 공개
- 실기/면접평가 시 3인 이상 참여, 1/3 이상 외부위원(타 대학 교수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
※ 실기/면접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위원 의무화 (타학과교수, 입학사정관, 공정관리위원 등)

6 추천자 특별전형

- 학교장(교사), 자치단체장, 각종 기관장 등의 추천을 받아 지원 자격, 자격 심사에 적용 또는 활용한 전형을 의미함
- 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방법으로 운영함
※ 고교유형별 또는 특정지역의 고교, 협정 체결 및 자매결연 고교만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음

7 대학자체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다음의 지원 자격을 대학자체 특별전형으로 설정할 수 있음

- | | |
|-------------|-----------|
| - 검정고시 출신자 | - 경력자 |
| - 대안학교 출신자 | - 봉사활동 관련 |
| - 다문화 가족 자녀 | - 비교과 등 |
| - 다자녀 가정 자녀 | - 그 외 기타 |

- 운영 기준 :

- 대학이 지원 자격 기준, 전형 대상 및 방법을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지원 자격을 설정할 때에는 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 대학이 대학자체 특별전형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전형으로 분리·운영 가능

- 경력자 특별전형을 실시할 경우, 경력자로 재직자, 취업자(학습근로자 등 포함), 산업체 근무 및 사회단체 활동 경력, 전공 관련 기능보유자, 창업자, 기타 산업체 현장과의 연계경력 등 각종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비교과 특별전형을 실시할 경우, 입학사정(평가) 시 산업체 인사를 참여시켜 학생의 취업의지, 재능과 열정, 소질과 적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할 것을 권장
-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 고등직업교육 기회 확대 제공 차원에서 다문화·다자녀 가정의 자녀,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형을 확대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

나. 정원 외 특별전형

「운영 원칙」

- 전형 취지에 적합하게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전형 취지 부합도”를 전형 요소 또는 평가지표에 반영 권장
-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 예고를 강화함
- 정원 외 특별전형 관련 부정 입학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모집요강 등에 명시 함

1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

(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
- 모집 인원 : 모집단위별 10%이내, 총 입학정원의 4%이내 모집 가능
- 운영 기준 :
 - 농어촌 학생의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학교 소재지·재학기간·학생 거주지·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격 기준을 대학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정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I 유형과 II 유형으로 구분·운영함

- (I 유형)은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함
- (II 유형)은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할 것을 요구함
- 대학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운영할 경우, I 유형과 II유형을 모두 운영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함

□ 제출서류 보완 및 의무화

- (공통) 제출서류
 - 지원자격 확인서
 - ※ 【붙임5】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서(양식) 참조
 - 농어촌 중·고등학교의 재학사실 확인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 (I 유형) 추가 제출서류
 -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수험생 본인의 기본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위의 서류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또는 모)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 ※ 그 밖에도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II 유형) 추가 제출서류
 - 농어촌 초등학교의 재학사실 확인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 검증 내실화 :

- 서류 검증을 내실화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 재확인 및 추가 서류 검토 등을 통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학생의 중·고등학교 입학 전후로 학생 및 부모의 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 학생 및 부모의 거주지가 농어촌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부모의 직장 소재지가 도시 지역인 경우 (출·퇴근 가능 여부 등 점검)
- 학생의 형제나 자매가 학생과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등



- 지역설정 기준 :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을 원칙으로 함

- 농가인구비율, 인구규모, 도시화의 진행 수준, 대도시로의 접근성 등 교육 여건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교육 여건이 미비한 지역의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유의
- 단, 대학의 판단에 따라 지원 자격에 반영하지 않고, 선발 과정에서 '교육환경'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
-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읍·면'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개편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개편 대상지역의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 설정

(2)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자 중 3년 이상 재직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 법령상 지원 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다)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체 근무 경력 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일 것
 - 가)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의 기간으로서 해당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지 않은 기간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 나)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직전 학기의 재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 다)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 모집 인원 : 모집단위별 제한 없음(단, 보건·의료 및 교원양성 관련 학과 모집금지. 전문교과

교원 양성 학과(보건교사 등)는 운영 가능), 총 입학정원의 11% 이내(농어촌 학생(가목)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라목) 포함) 모집 가능

□ 운영 기준 :

-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모집단위 신설이 원칙이나, 기존 학과에 별도·혼합반 편성 및 운영 가능함
- 다만, 산업체 근로자가 일-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및 수업 방식 등을 재직자 맞춤형으로 개편하여 특별 프로그램(야간·주말과정, 사이버 과정 등)을 개발·운영 할 것(보건·의료 및 교원 양성 관련 학과 제외)
- 군 의무복무 경력을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

(3)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라목)

- 법령상 지원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모집 인원 : 모집단위별 20% 이내, 총 입학정원의 5.5% 이내(농어촌 학생(가목)을 포함) 모집 가능

□ 운영 기준 :

- 2014학년도부터 ‘우선돌봄 차상위가구’(현재,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비수급계층)에 대해서도 특별전형 지원 자격 인정
- 지원자격 산정기준일을 구체적으로 모집요강에 명시해야 함
- 수험생 제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편법·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졸업 동등 학력자를 지원 자격 상에서 제한할 수 없음
 - ※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대상 기준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②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특별전형

자격 기준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외국에서 학위 취득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지원자격 관련 서류 제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 포함)

모집 인원 : 제한 없음

※ 단, 간호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이내, 보건계열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가능

【학력인정 기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1의2. 법 제50조의3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학과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③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자격 기준 :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종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도 대상자로 정함

모집 인원 : 제한 없음

운영 기준 :

-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 기준을 대학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정

- 단, 특정 학과나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하여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특별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장애의 정도, 교육환경 등 고려) 등을 도입하여 중증 장애 학생 등이 선발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함
-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졸업 동등 학력자를 지원 자격 상에서 제한할 수 없음

4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2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제6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결혼이주민)(제7호)에 해당하는 자

※ 법령상 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6호, 제7호

- 모집 인원 :

대상자	모집인원
• 재외국민 및 외국인(2호)(6호, 7호 대상자 제외)	모집단위별 10% 이내, 총 입학정원의 2% 이내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6호)	제한 없음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결혼이주민)(7호)	제한 없음

- 운영 기준 :

- 대학은 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급별 수학 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기간)등을 고려하여, 자격 기준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모집 요강에 명시함
- 국외 학교 재학 기간, 자격 인정 기준 시점, 자격 기간 계산 기준, 지원 자격 인정 유효 기간,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제3국 수학 인정 범위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 설정

○ 재학기간을 설정할 때, 외국인 학제 등을 고려하여 년도가 아닌 학기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권장
(예 : 중고과정 연속 2~3년 이상,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4~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대학은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 강구함
 - 부모·학생의 외국 거주 의 적법성 및 직업의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부모의 직업과 거주 기간 등을 자격 기준으로 부가 설정하고, 모집 요강에 기재된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 강화
 - 대상자 간 형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격 기준을 설정함
- 대학은 부모의 국외 근무 기간 허위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통한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증 및 부모의 재직 기관에 국외 근무 기간을 확인하는 절차를 권장함
 - 대학 간 제출 서류의 위·변조 적발 사례 공유 등 상시 검증 체제를 구축하여 입학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원 자격 편법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 상실·취득 내용이 기록된 기본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확인할 것을 권장함
- 외국인 유학생은 일정 기준 이상의 언어(한국어 등) 능력 수준자를 선발할 것을 권장함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참고)

□ 전형 일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7호(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은 7월부터 가능하며, 원서접수, 전형기간, 합격자 발표 및 등록 등 세부 일정은 대학이 정하여 운영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7호(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9월 입학자로 선발 가능하며, 이 경우 9월 입학자를 위한 별도의 모집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운영함
 - 모집계획에 따라 대학의 자율로 일정을 정하여 운영하되 8월말까지 선발·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합격한 자는 9월 입학자 선발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음
 - 9월 입학에 대한 모집계획 및 모집결과는 전문대교협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별도 안내)

□ 전형 방법

- 전형 방법은 대학이 합리적으로 자율 결정하여 시행함
- 「업무처리요령」 등을 작성·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근무 및 재학 기간 등 자격 요건과 전형 방법 변경 시 경과조치 및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함

□ 지원 자격 심사사항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공통 지원 자격 표준화 적용(입학정원의 2% 이내 선발 기준)
 - 학생 이수기간은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으로 표준화
 - 체류기간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설정하고 모집요강 등에 안내
 - ※ 체류기간 산정을 위한 1개 학년의 기준은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임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1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외의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서는 미인정함
 - 기타의 경우는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판단함
 - 자격 기준에 대한 판단은 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되, 안내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대학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 권장함

□ 전 교육과정 이수자 지원 자격 심사 사항(「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국외 1개국 내에서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권장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권장함
 - 국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을 권장함



학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사항

○ 학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 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국외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지원 자격에 따른 제출 서류

국외발급 서류(아포스티유 확인서(Apostille Convention), 영사확인 서류 등)도 반드시 원서접수 시점(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받아야 함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구분	내용
국외근무자의 정의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재학기간의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국외체류일수 조건	해당 전형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국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부모(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에 체류해야 함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 학생)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 11.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 12.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 <p>※ 추가 제출서류는 대학 자율로 결정하고, 성적증명서로 재학기간이 확인이 가능할 경우 재학 증명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음</p>

○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구분	내용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학력확인서 및 학력인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구분	내용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정의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구분	내용
제출서류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5.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구분	내용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정의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제출서류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 재학증명서 3. 초·중·고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사본

〈참고〉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관련근거 :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735(2020.04.03))

5]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전문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 제외)에 입학하는 만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 단, 수험생은 입학연도 기준으로 자격 기준에 충족되어야 함

□ 모집 인원 : 모집단위별 제한 없음, 총 입학정원의 5% 이내 모집
※ 단, 간호학과 및 보건계열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모집 가능

□ 운영 기준 : 평생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전형 활성화 권장

- 재직자·중도퇴직자 등이 재취업·창업을 위한 최신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성인 중심의 입학전형 활성화 권장
-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입학전형 개발
※ 산업기술 고도화와 다양한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평생직업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평생직업교육프로그램 마련

⑥ 서해5도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서해 5도에서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또는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모집 인원 : 모집단위별 5% 이내, 총 입학정원의 1% 이내
- 운영 기준 : 선발방법 등은 대학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정

⑦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특별전형 (제주도특별자치도만 가능)

- 자격 기준 : 지원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부, 모, 본인 모두)로서,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구성원이거나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
 - ※ 법령상 근거 : 「제주특별법」 제211조, 제218조,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
- 모집 인원 : 모집단위별 10% 이내,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
- 운영 기준 : 제주도 지역에 한해서만 전형을 운영하며, 선발방법 등은 대학 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정

⑧ 산업체 위탁교육 특별전형

- 산업체 위탁교육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격기준 및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시행계획에 의거하고, 대학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
- 그 밖에 교육부가 정하는 위탁학생은 모집인원은 제한이 없으나 세부 시행계획은 교육부가 정한 별도 지침에 따라 대학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



III

전형요소

「전형요소 및 유형 구분」

- 전형요소
 - 전형요소는 학생 선발 시 실제 적용되는 평가항목으로 학생부(교과/비교과), 수능, 면접, 실기, 서류 등 5개 요소를 의미함
- 전형유형
 - 주된 전형요소를 중심으로 한 전형의 유형으로서 학생부 위주, 수능 위주, 면접 위주, 실기 위주, 서류 위주를 의미함
 - ※ 위주 : 전형요소 중 주된 요소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평가항목 반영 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사용

전형유형		내용
학생부 위주	학생부교과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산출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하여 평가하고, 교과 반영 비율이 50% 초과하는 전형
	학생부종합	학생부 비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성적이나, 면접 등의 요소와 병행하여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
수능 위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
면접 위주		수험생의 소질과 적성, 인성, 취업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실기 위주		수험생의 지원 전공과 연계한 실제 보유한 기술이나 기능 수준 중심으로 평가
서류 위주		수학 및 학업 계획서, 추천서, 전공연계 자격, 기타 개인의 업적·특기·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중심으로 동기와 관심, 재능 중심으로 평가 ※ 단, 수학·과학·영어·논술 경시대회 수상 등 각종 교과위주의 스펙 관련 서류와 구별됨

1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 작성 기준일

- 수시모집 : 2024. 8. 31.(토)
- 정시모집 : 2024. 11. 30.(토)

□ 학교생활기록부 데이터 제공

○ 제공시기

- 수시모집 : 2024. 9. 14.(토)
- 정시모집 및 자율모집 : 2025. 1. 7.(화)

○ 제공방법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공

○ 제공대상 : 2017. 2월 졸업자 ~ 2025. 2월 졸업(예정)자

○ 제공기관 : 각 시·도교육청

※ 제공대상, 자료 제공일 등은 정부의 운영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활용

○ 평가를 위한 반영비율 및 반영여부 등은 전공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결정

※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학생부가 없는 자 또는 전산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자 등은 비교과형 요소를 활용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개발·활용

○ 대학 및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2015 고교 교육과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학생부 교과성적, 교과학습발달사항, 교과 외 활동사항 등을 평가함

- 석차등급이 제공되지 않는 교과 및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만학도 등의 경우, 대학 및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평가 산출 방식을 제시해야 함

○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의 대입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함

- 온라인 제공을 희망하는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은 각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www.neis.go.kr) 의 검정고시서비스에서 온라인 제공 신청

대입전형자료와 관련한 세부 행정사항(시기, 방법, 대상, 학생부 블라인드 자료 적용 범위 등)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계획」에 따름



2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 및 성적 통지일

- 시험 일 : 2024. 11. 14.(목)
- 성적통지일 : 2024. 12. 6.(금)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전산자료 제공

- 제공기간 : 2024. 12. 6.(금) ~ 2025학년도 대입전형 마감일
- 제공방법 : 온라인 제공
- 제공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제공자료
 -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 :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표기
 - 국어, 수학, 탐구 영역(과목) :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한국사 및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등급 분할 원점수】

등급	과목	1	2	3	4	5	6	7	8	9
분할기준 (원점수)	한국사	50~40	39~35	34~30	29~25	24~20	19~15	14~10	9~5	4~0
	영어	100~90	89~80	79~70	69~60	59~50	49~40	39~30	29~20	19~0
	제2외국어 /한문	50~45	44~40	39~35	34~30	29~25	24~20	19~15	14~10	9~0

【국어, 수학, 탐구 영역(과목)의 등급별 기준 비율】

등급	1	2	3	4	5	6	7	8	9
기준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활용

- 수시모집에서 수능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급으로만 반영하여 전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함
- 정시모집에서 수능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 및 지원 가능성 확대를 위해 수능 응시영역 또는 반영영역(영역 내 선택과목 포함)과 반영비율, 수능 가(감)산점 등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권고함
- 정시모집에서 수능 등급(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백분위 또는 표준점수를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함
 - ※ 대학의 자체산출지표(방법) 활용은 지양함
- 대학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정시모집 수능 성적 등급(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을 점수화하여 반영할 경우 산출 방식을 제시해야 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성적통보 이후 부정행위자가 적발된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
- 대학은 부정행위자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대상자의 수능 성적을 무효로 하여 학칙에 따라 처리
 - ※ 수능에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정한 바에 따름

수능과 관련한 세부 행정사항(수능시험일, 성적 통지일, 성적 제공 일시, 성적자료 제공 등)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에 따름



3 기타 비교과 요소 등

- 직업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부(교과) 이외에 취업역량에 필요한 다양한 비교과 요소를 활용할 수 있음
 - 학생부(비교과)를 활용하여 선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학교생활중심의 학생 선발 강화 적극 노력

- 대학 특성에 맞는 비교과형 요소를 적극 활용하되, 전공 특성에 따라 대학의 장이 별도의 전형요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전형요소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거,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지 아니함
 - 면접의 경우,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는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은 가급적 지양함
 - 면접위주 전형은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함

- 전형 서류와 관련하여, 입학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해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 및 모집요강 등에 따라 적정 조치함
 - 학칙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입학무효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함
 - 지원자 제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편법·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IV

입학전형 및 일정

1 입학전형 공통사항

- 모집대상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모집시기 구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 모집시기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하며, 수시모집은 2회(차)로 분할모집하고, 정시모집은 분할 없이 1회(차)만 실시
 - 모집기간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이후에는 그 기간을 준수함

- 모집인원
 - 모집인원은 모집유보제 및 신입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를 반영하여 결정

- 모집방법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 후 공개 모집함

- 전형일정 :
 - (접수기간) 각 모집시기별 접수기간은 시작일과 마감일을 전문대학 모두 동일하게 실시
 - (자율모집) 정시모집 접수 이후 결원 보충을 위한 추가접수 및 충원은 대학이 자율로 실시 할 수 있음. 단, 정시모집과 자율모집을 반드시 구분하여 모집함
 - 정시모집 접수 종료 이후 결원이 발생할 시 입시 마감일인 2025. 2. 28.(금)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 가능함



□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조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

-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은 무효로 함
- 전문대학 및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참고]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대학, 「고등교육법」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각종학교로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원(한국, 광주, 대구경북, 울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전공대학(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등이 해당됨

2 수시모집

□ 모집일정 :

구분	일정	
	1차	2차
원서접수기간	○ 2024. 09. 09.(월) ~ 10. 02.(수)	○ 2024. 11. 08.(금) ~ 22.(금)
전형기간	○ 2024. 10. 03.(목) ~ 합격자 발표 전까지 자율	
합격자 발표	○ 2024. 12. 15.(일) 까지	
등록기간	○ 2024. 12. 16.(월) ~ 18.(수) (3일)	
미등록 총원	○ 2024. 12. 30.(월) 까지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1시까지)	

□ 전형기간 :

- 상기 전형기간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
- 수시모집에서 면접·실기 등의 고사 일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나, 지필고사 등 고등학교 학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
 - ※ 단, 동일 지역(권) 내 소재의 대학 간에 면접·실기 등의 고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학 간에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7호(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은 7월부터 가능하며, 원서접수, 전형기간, 합격자 발표 및 등록 등 세부 일정은 대학이 정하여 운영함
 - 3월 입학자 모집 및 전형은 사전에 입학전형시행계획을 통해 예고하여야 함

□ 지원방법 : 전문대학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시모집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음

- 수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 간의 복수지원 가능함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 대학 내의 복수지원이 가능함
 - ※ 이 경우, 각 대학 내 복수지원 허용여부를 모집요강에 안내함



- 전문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전문대학은 복수지원 허용 범위와 위반자에 대한 입학무효 등을 모집요강 및 입학지원서 등에 반드시 명기하여 수험생이 사전 인지하도록 조치함

3 정시모집

□ 모집일정 :

구분	일정
원서접수기간	○ 2024. 12. 31.(화) ~ 2025. 01. 14.(화)
전형기간	○ 2025. 01. 15.(수) ~ 합격자 발표 전까지 자율
합격자 발표	○ 2025. 02. 07.(금) 까지
등록기간	○ 2025. 02. 10.(월) ~ 02. 12.(수) (3일) ※ 수시모집 예치금 등록자는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을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함
미등록 총원	○ 2025. 02. 28.(금) 까지

□ 전형기간 :

- 상기 전형기간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
- 동일 지역(권) 내 소재의 대학 간에 면접·실기 등의 고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학 간에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 지원방법 : 전문대학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시모집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음

- 정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 간의 복수지원 가능함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 대학 내의 복수지원이 가능함
※ 이 경우, 각 대학 내 복수지원 허용여부를 모집요강에 안내함
- 전문대학은 복수지원 허용 범위와 위반자에 대한 입학무효 등을 모집요강 및 입학지원서 등에 반드시 명기하여 수험생이 사전 인지하도록 조치함
 - 원서접수 시 관련 사항 점검, 온라인 원서접수 시 수험생의 이전 지원 현황, 합격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규정에 위반될 경우 원서접수 처리 불가 등



4 자율모집

□ 모집일정 :

구분	일정	
	정시모집 결원 대학	정시모집 이후 대학
접수·전형· 합격통보 마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01. 15.(수) ~ 02. 28.(금) 까지 ※ 단, 합격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2025. 02. 10.~02. 12.)에 반드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02. 28.(금) ※ 정시모집 등록기간 마감 이후 접수 실시

□ 전형기간 : 상기 전형기간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

□ 지원방법 : 전문대학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율모집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음

- 자율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 간의 복수지원 가능함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 대학 내의 복수지원이 가능함
※ 이 경우, 각 대학 내 복수지원 허용여부를 모집요강에 안내함
- 전문대학은 복수지원 허용 범위와 위반자에 대한 입학무효 등을 모집요강 및 입학지원서 등에 반드시 명기하여 수험생이 사전 인지하도록 조치함
 - 원서접수 시 관련 사항 점검, 온라인 원서접수 시 수험생의 이전 지원 현황, 합격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규정에 위반될 경우 원서접수 처리 불가 등

□ 대학은 원서접수 선착순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운영하여야 함

5 입학전형 세부사항

가. 합격자 발표

- 모집시기별로 모집요강에 정해진 기간과 인원수를 준수하여 합격자를 발표함
 - 대학은 수험생들이 합격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격자를 발표해야 함
- 수험생 전원 또는 예비합격 후보자의 순위명단은 최초 합격자 발표 시 일괄 발표하거나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선택하되, 등록 개시 전일까지는 대상자에게 통보 또는 열람을 권장함
 -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일괄 발표 또는 개인별 열람이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함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정시 및 자율모집과 일반대학 추가모집에 지원 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함
 - 충원 대상이 되는 예비 합격 후보자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예 : 전화녹취 등)를 확보하도록 함
 - 충원합격 통보를 일방적으로 고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별 통보의 경우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의 처리방침을 모집요강에 명시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함
 - 수험생은 합격자 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일정, 고지방법(대학 홈페이지), 기타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합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모집요강에 안내하여야 함
- 대학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하여 과도한 초과 선발을 지양하며, 동점자 처리 세부기준은 대학별 모집요강에 사전 고지하여야 함



나. 신입생 등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 ▶ ‘등록’이라 함은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하며, 등록여부 판단을 위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등록포기 절차, 환불 신청 절차를 마련 시행
- ▶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의 등록포기 및 그에 따른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리

□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충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1개 대학에만 등록함
- 수시모집의 등록은 문서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총 납부금액의 10%이내에 해당하는 ‘등록확인 예치금’징수 가능함
- 등록기간 전에 사전 예비 등록을 받는 것은 금지함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자가 포기신청을 할 경우 대학은 바로 포기처리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할 것
- 수시모집 예치등록 후 최종 등록기간(잔여등록)은 정시모집 등록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수험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제공하고, 수시 최종등록(잔여등록) 미납으로 인한 결원인원은 정시모집에서 충원할 수 있음

□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

- 정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 내 또는 대학별로 설정한 등록기간 내 등록 처리 하며, 정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충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1개 대학에만 등록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으로 함
 - ※ 대학은 등록금 납부자가 포기신청을 할 경우 즉시 처리 하여야 함

다. 미등록 충원

- 수시 차수별 미충원 인원은 상호 충원할 수 있으며,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모집 가능함
 - ※ 단, 미충원 인원에 대한 이월 모집 여부(수시 전형 간 이월 포함)를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 정시모집 접수 이후, 결원 보충을 위한 자율모집 접수 및 충원은 대학이 자율로 실시
 - ※ 단, 자율모집을 실시하려는 대학은 결원사항과 모집인원, 전형방법, 전형일정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포함한 전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모집단위별 특별전형 등록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부족인원은 일반전형으로 모집인원을 이월하여 일반전형 지원자로 충원하며, 모집단위별 일반전형 등록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부족인원은 특별전형으로 모집인원을 이월하여 특별전형 지원자로 충원 가능함
- 대학은 미등록 충원 실시 여부, 충원일정 및 방법 등 미등록 충원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공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지원자가 없도록 해야 함
- 예비합격자의 충원은 모집단위별 지원자 전원에 대해 발표한 순위 또는 합격자 사정 시 미리 확정하여 둔 예비합격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함
- 미등록자 충원과정에서 대학 또는 금융기관의 과실사고로 인해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함
- 정시모집 결원 대학에 대한 자율모집은 정시모집 원서접수 이후에 가능함
 - (정시모집 결원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기간 이후 결원이 발생한 대학은 결원된 인원에만해서 2025. 1. 15.(수)부터 자율모집을 허용함
 - ※ 단, 자율모집을 통한 합격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2025. 2. 10. ~ 2. 12.)에 반드시 등록함
 - (정시모집 이후 대학) 정시모집 등록기간 마감 이후, 대학이 자율모집을 할 경우 시기는 입학전형 마감일인 2025. 2. 28.(금)까지로 하고 추가 합격자를 등록함



V

입학전형 행정사항

1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및 발표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 제출기한 : 2023. 3월말까지 (별도 안내)
- 각 대학은 2025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사항을 전문대교협의 입학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기한 내 제출함

□ 시행계획의 공표

- 공표기한 : 2023. 4월말까지
- 시행계획을 각 대학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함
 - ※ 시행계획에 대해 전문대교협의 조정권고 등 통보가 있을 시 대학은 이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발표함

□ 입학정보의 제공

- 대학은 수시모집, 정시모집 주요사항에 대한 전문대교협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함(별도 안내)
- 전문대교협은 대학별 시행계획 내용을 수합·통계하고 주요 입학정보에 대하여 언론기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하도록 함

2 지원·등록 현황 제출

- 수시모집 지원 및 등록 현황을 수시모집 종료 후, 전문대교협에 제출
- 최종 지원 및 등록 현황을 당해 학년도 전형 종료 후, 전문대교협에 제출
- 대학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등 입학전형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방안 수립·운영 결과를 전문대교협에 제출
- 지원방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 개시일 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상세 자료를 전문대교협에 제출

※ 전문대교협에 제출하는 기한은 별도 안내

3 지원방법 위반자 관련사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 지원방법위반자 처리업무 수행
- 입학 지원방법 위반자 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정시모집 입학지원서에 수시모집 합격여부를 반드시 표시
 - 수험생 본인으로부터 반드시 확인절차를 밟고 그 근거를 보관
 - 수험생이 지원서에 합격여부를 의도적으로 허위 표시할 경우 입학 지원방법 위반자에 해당하여 추후 입학이 무효 됨
 - 합격표시 된 지원서를 접수하지 않도록 각 대학은 각별히 유의하길 바람
 -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험생에게 재차 확인하여 지원방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
- 수험생은 입학 후라도 지원방법위반 및 입학부정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을 무효로 함
 - 신입생 모집요강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한다”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
- 전형일정을 위반하여 모집 금지(수시모집 기간 중 정시 원서접수 등)



- 입학 홍보 및 원서접수 과정에서 대학입학지원 방법을 잘못 안내하거나 수험생의 의사와 다르게 접수하여 입학전형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입학지원서 상에 지원방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 복수지원 관련 위반사항을 모집요강 및 입학지원서 등에 반드시 명기하고, 입학원서 접수과정에서 입학무효 조항을 확인하도록 함
 - 수시모집에 합격 후 정시모집, 자율(추가)모집에 지원하지 않도록 아래 예시와 같이 모집요강 및 입학원서(인터넷포함) 등에 명기

■ 수시모집 합격여부 ■	
본인은 지원방법위반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2025학년도 수시모집(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input type="checkbox"/> 있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예치금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정시모집 및 자율(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입학이 무효 됨을 알고 있음.	
지원자 확인 _____ (서명)	접수자 확인 _____ (서명)

※ 창구접수 시에는 지원자와의 대면으로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함

- 이중 등록과 관련한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모집요강에 명기하도록 함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기간 내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각 대학은 모집시기별 합격자, 등록자 명단 등 대입지원위반자 검색을 위한 자료를 요청기간에 맞춰 신속히 제공하여 대입지원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4 등록금 환불 관련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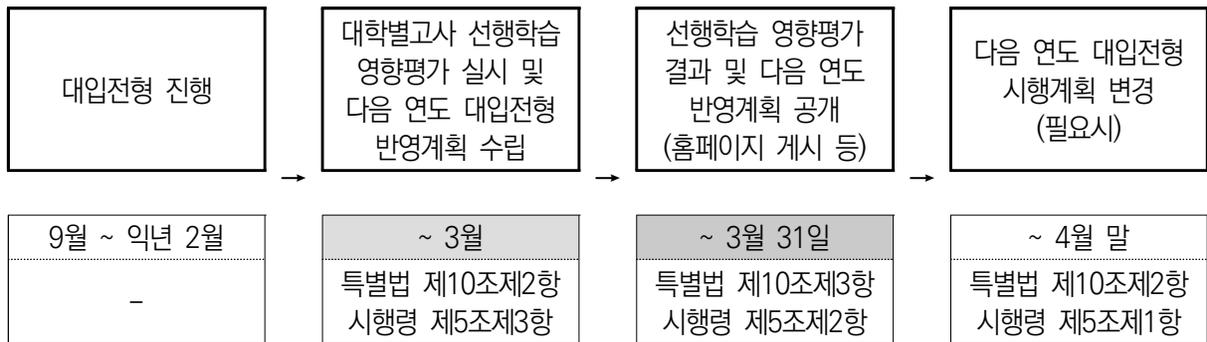
-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절차를 모집요강에 명기하여 수험생이 사전에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은 등록여부 판단을 위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등록포기 절차, 환불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함
-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의 등록포기를 표시한 경우 및 그에 따른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리함

5 입학전형료

- 입학전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 실비만 책정하고 사회·지역배려 대상자 등에게는 부담 완화 등 고려할 것을 권장함
 - 이전 학년도 지원율 및 전형료 수입·지출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전형료를 적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
- 전형료 수입·지출 및 환불에 관한 「고등교육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동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여 명확히 처리함
- 전형료와 관련한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형료 예·결산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

6 선행학습 영향평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였는지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추진 절차



-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자체 계획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연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반영
 - 선행학습 영향평가 방법, 절차 등을 학칙으로 규정하며, 영향평가 시 현직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한 외부위원(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균형있게 참여

※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 면접/구술고사, 논술 등 필답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등은 적용 제외)

7 기타사항

- 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목적으로 지역 및 일선 고등학교 관계자에게 국내외 연수, 금품 및 향응 접대, 상품권 등의 제공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관리하도록 함
- 대학은 학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과제도를 운영·관리하되, 신입생 충원을 위한 편법적인 전과제도를 금지함
- 대학은 입시 진행시, 필요한 경우 수험생의 신분 확인을 위해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가 기재된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모바일 신분증 등)을 준비·지참할 수 있도록 안내 함
-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졸업 동등 학력자에 대한 성적처리방법을 별도 명시하고 안내하여야 함



붙임 1 전국 전문대학 현황(2022년 8월 기준)

지역	대학명	지역	대학명	지역	대학명	지역	대학명
서울	동양미래대	경기	청강문화산업대	경북	성운대	전남	전남과학대
	명지전문대		한국관광대		안동과학대		전남도립대
	배화여자대		한국복지대		영남외국어대		청암대
	삼육보건대	경남정보대	포항대		한영대		
	서울여자간호대	부산	대동대	대전	호산대	전북	군산간호대
	서일대		동의과학대		대덕대		군장대
	송의여자대		동주대		대전과학기술대		백제예술대
	인덕대		부산경상대		대전보건대		원광보건대
한양여자대	부산과학기술대		우송정보대		전북과학대		
인천	경인여자대	울산	부산여자대	세종	한국영상대	제주	전주기전대
	인천재능대		부산예술대	충남	백석문화대		전주비전대
	인하공업전문대		울산과학대		신성대		제주관광대
경기과학기술대	춘해보건대	아주자동차대	제주한라대				
경기	경민대	경남	거제대	충북	연암대	* 대학은 국공립대학임.	
	경북대		경남도립거창대		충남도립대		
	계원예술대		경남도립남해대		해전대		
	국제대		김해대	강동대			
	김포대		동원과학기술대	대원대			
	농협대		마산대	충북도립대			
	대림대		연암공과대	충북보건과학대			
	동남보건대		진주보건대	충청대			
	동서울대		창원문성대	강릉영동대			
	동아방송예술대		한국승강기대	강원관광대			
	동원대	계명문화대	강원도립대				
	두원공과대	대구공업대	세경대				
	부천대	대구과학대	송곡대				
	서울예술대	대구보건대	송호대				
	서정대	수성대	한국골프대				
	수원과학대	영남이공대	한림성심대				
	수원여자대	영진전문대	광주보건대				
	경기	신구대	경북	가톨릭상지대	광주		기독교간호대
신안산대		경북과학대		동강대			
안산대		경북도립대		서영대			
여주대		경북보건대		조선간호대			
연성대		경북전문대		조선이공대			
오산대		구미대		고구려대			
용인예술과학대		대경대	광양보건대				
웅지세무대		문경대	동아보건대				
유한대		서라벌대	목포과학대				
장안대		선린대	순천제일대				

* 한국복지대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한경대학교와 통합

붙임 2 모집요강 표준(안) 마련

전문대학교협은 대학이 다음의 모집요강 표준 1(안)과 2(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활용하여 모집요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대학의 편의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집요강 표준(안)을 보완하도록 함

모집요강 표준 1(안)	모집요강 표준 2(안)
1. 대학소개(대학사명, 비전, 목표)	1. 대학소개(대학사명, 비전, 목표)
2. 전형요약 및 전년도대비 변경 사항	2. 학과 안내 (학과소개, 주요교과목, 진로분야, 취득자격증, 취업 우수사례 등)
3. 학과별/시기별/전형별 모집인원	
4. 전형일정	3. 전형일정
5. 접수방법 및 전형료	
	4. 모집시기별 전형별 모집인원
6. 지원자격	5. 세부전형별 안내
7. 전형방법	■ ○○○전형
※ 동점자 처리기준	가. 지원자격
8. 제출서류	나. 모집인원
	다. 전형방법
	라. 제출서류
9. 성적반영방법 가. 수시 : 학생부반영방법 나. 정시 : 수능반영방법 다. 학생부반영방법	6. 성적반영방법 가. 학생부 성적반영방법 1) 학년별 및 요소별 반영비율 2) 전형별 성적반영비율 및 반영요소 3) 점수환산표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다. 동점자 처리 기준 라. 선발방법 마. 면접고사
10. 합격자발표 및 총원 안내	7. 합격자발표 및 총원 안내
11. 수험생 유의사항 (「고등교육법」 기본사항 유의사항, 대학별 유의사항)	8. 수험생 유의사항 (「고등교육법」 기본사항 유의사항, 대학별 유의사항)
12. 제출서류 안내(양식 포함) (대학 선택)	9. 제출서류 안내(양식 포함) (대학 선택)
13.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10.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14. 학과 안내 (학과소개, 주요교과목, 진로분야, 취득자격증, 취업 우수사례 등)	11. 학사안내 (장학금, 기숙사, 학사, 취업, 연계편입 등)
15. 학사안내 (장학금, 기숙사, 학사, 취업, 연계편입 등)	

**붙임 3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006			
중기능	대학학사행정	소기능	입시관리
단위과제명	입시업무일반		
업무기준	기관고유(유사공통)		
단위과제 설명	입학업무 기본계획 및 입학업무일반사항(입시관련 성적 이외 업무)을 이행하는 업무		
보존기간	5년		
보존기간 책정사유	입학업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증빙하기 위해 5년 보존		
유사 단위과제	입시설명회, 입시제도 연구, 입시 홈페이지 관리, 입시매뉴얼, 입시 홍보		

007			
중기능	대학학사행정	소기능	입시관리
단위과제명	입시관리		
업무기준	기관고유(유사공통)		
단위과제 설명	대학 및 대학원의 신입생 선발 업무 중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편입생, 시간제등록생 모집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하는 업무		
보존기간	10년		
보존기간 책정사유	입학전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10년 보존		
유사 단위과제	편입학관리, 재입학관리, 입학정책위원회		

008			
중기능	대학학사행정	소기능	입시관리
단위과제명	입학사정관 운영관리		
업무기준	기관고유(유사공통)		
단위과제 설명	입학사정관 전형 개발 및 제도 개선, 홍보, 상담업무 등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관련된 업무		
보존기간	10년		
보존기간 책정사유	대학입학전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0년 보존		

※ 근거 : 「2021년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국가기록원, 2021년 12월)



붙임 5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전형 일정 비교

구분		일반대학	전문대학
수시 모집	원서접수기간	○ 2024. 09. 09.(월) ~ 13.(금) 중 3일 이상	1차 ○ 2024. 09. 09.(월) ~ 10. 02.(수) 2차 ○ 2024. 11. 8.(금) ~ 11. 22.(금)
	전형기간	○ 2024. 09. 14.(토) ~ 12. 12.(목)(90일)	○ 2024. 10. 03.(목) ~ 합격자 발표 전까지 자율
	합격자 발표	○ 2024. 12. 13.(금)까지	○ 2024. 12. 15.(일)까지
	등록기간	○ 2024. 12. 16.(월) ~ 18.(수)(3일)	○ 2024. 12. 16.(월) ~ 18.(수) (3일)
	미등록 총원 합격통보 마감	○ 2024. 12. 26.(목)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 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 2024. 12. 30.(월) 까지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1시까지)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 2024. 12. 27.(금) 22시까지	
정시 모집	원서접수기간	○ 2024. 12. 31. (화) ~ 2025. 01. 03.(금) 중 3일 이상	○ 2024. 12. 31.(화) ~ 2025. 01. 14.(화) (15일)
	전형기간	○ 가군: 2025. 01. 07.(화) ~ 14.(화)(8일) ○ 나군: 2025. 01. 15.(수) ~ 22.(수)(8일) ○ 다군: 2025. 01. 23.(목) ~ 02. 04.(화)(13일)	○ 2025. 01. 15.(수) ~ 합격자 발표 전까지 자율
	합격자 발표	○ 2025. 02. 07.(금)까지	○ 2025. 02. 07.(금)까지
	등록기간	○ 2025. 02. 10.(월) ~ 12.(수)(3일)	○ 2025. 02. 10.(월) ~ 12.(수) (3일) ※ 수시모집 예치금 등록자는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을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등록 기간에 등록해야 함
	미등록 총원 합격통보 마감	○ 2025. 02. 19.(수)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 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 2025. 02. 28.(금) 까지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2시까지) [자율모집] ○ 2025. 02. 13.(목) ~ 02. 28.(금) 까지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2시까지)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 2025. 02. 20.(목) 22시까지	
추가 모집	접수·전형· 합격통보 마감·등록	○ 원서 접수/전형/합격자 발표/등록 2025. 02. 21.(금) ~ 28.(금) ※ 합격통보마감 2025. 02. 28.(금) 18:00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 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 정시모집 원서접수기간 이후 결원이 발생한 대 학은 결원된 인원에 한해서 2025. 01. 15.(수) 부터 자율 모집 허용 ※ 단, 자율모집을 통한 합격자는 정시모집 등록 기간(2025. 2. 10. ~ 12.)부터 등록해야 함
	등록기간	○ 2025. 02. 28.(금) 22시까지	